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7. 14.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발의일자 : 2009년 6월 24일

나. 발 의 자 : 고기판 의원 외 7인

다. 회부일자 : 2009년 7월 1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46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9. 7. 2)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 案 說 明 자 : 고 기 판 의 원)

가. 제안이유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주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구청장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활동을 장려 하는데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 계획에 따라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권장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 홍보 활동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구청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경비와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 의무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권오운)

- 본 조례안은 구민의 헌혈정신 고취와 헌혈활동 증진을 통해 원활하고 안정적인 혈액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서 관제법령이나 절차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25
----------	-----

발의연월일 : 2009년 6월 24일

발의자 : 고기판 의원

1. 제정이유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헌혈인구의 저변이 확대 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 계획에 따라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권장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다.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 홍보 활동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라. 구청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경비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마.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 의무규정을 마련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나. 예산조치 : 2010년 본예산 반영필요

다. 기 타

(1)입법예고 결과 : 해당사항없음

(2)규제심사 결과 : 해당사항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국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국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 권장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국민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헌혈홍보활동) 구청장은 헌혈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1.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

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